

[별표 2]<신설 1982·4·24, 1984·7·23, 1992·11·6>

중기의제작·조립자등록기준

[제13조제 1항과 관련됨]

구 분	명 칭	제 원 등	보 유	비 고
대지및건물	1.옥내작업장 면적 2.옥외작업장 면적	사무실.설계실.공작실.작 업장 .창고.검사장 등 작업장·출고대기장·검사 장등	1,300 m ² 이상 2,000 m ² 이상	
부대시설	1.천정크레인 또는 체인부력 2.트럭 3.검사시설	2톤이상 2.5톤이상 검차대등	0 0 0	
제작기계	1. 선 반 2. 밀링머신 3. 프레스 4. 절단기 5. 드릴머신 6. 벤딩머신 7. 용접기 8.그라인딩머신		0 0 0 0 0 0 0 0	
검사기계	1.만능재료시험기 2.경도시험기 3.진동.소음측정기 4.매연측정기 5.유압계 6.볼트 및 암페어메 타 7.속도계시험기 8.전조등시험기 9.회전반경측정기 10.제동시험기 11.일산화탄소측정 기 12.사이드스립측정 기 13.경사각도시험기 14.탄화수소측정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술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산업기계기술 사또는건설기계기		1인이상	준설선 및 사리 채취 기를 제작·

	술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기 사1급 또는 중기 정비기사1급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기 사2급 또는 중기 정비기사2급		2인 이상 4인 이상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조선기 사 2급이상 1 인을 포함 할것
--	--	--	--	--

※주:1. "○"표는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제작기계 및 검사기계임.

2. 제9호 내지 제14호의 검사기계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제작·조립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중기제작·조립자와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체로 중기를 제작·조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4호의 검사기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검사기계로 2이상의 검사기능이 있는 검사기계를 갖춘 때에는 당해 검사기능이 있는 검사기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봄.